

-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  
**행정사무감사계획(안)**



2019. 5.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#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의안	
번호	

제안일자 : 2019. 5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한다. (2019. 6. 4. ~ 6. 12.)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(7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로 한다.

## 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)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609호, 2019. 3. 12.) 제39조 ~ 제50조, 제52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#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## 1. 감사의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, 제52조 규정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·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,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·활용하고자 함

## 2. 감사기간

○ 2019. 6. 4.(화) ~ 6. 12.(수)[9일간]

## 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○ 마포구의회사무국

## 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의 회 운 영 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(7명)	마포구의회 사 무 국	의회운영 위원회실	신준호	송미희

## 5. 감사일정

구분	일 정	내 용	비 고
준비 단계	2019.5.15.(수)	○ 감사계획서 수립, 채택 ○ 서류제출, 증인출석요구서 작성	
	~ 5.16.(목)	○ 감사 요구 목록 수합	
	5.21.(목)	○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○ 감사계획 통보	
	~ 5.28.(화)	○ 감사관계 자료 수합 ○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	
실시 단계	2019.6. 4.(화) ~ 6.12.(수)	○ 위원장의 감사선언 ○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-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- 증인선서 -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-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○ 감사종료 선언	
감처사리 결단 과계	2019.6.28.(금) ~ 7.31.(수)	○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○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○ 감사결과 보고 (본회의) ○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	

## 6. 감사요령

-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## 7. 행정사항

- 가.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.
- 나.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,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.